

#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21.7.19.		16		
2	2022.5.2.		17		
3	2022.8.10.		18		
4	2023.2.27.		19		
5	2024.7.29.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#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

**제1조(목적)** ① 이 운영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(이하 “통합관리 지침”)의 관련 규정을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이 운영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생연구자의 처우, 인권 및 권익보호,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7.19.>

**제2조(개념 및 적용대상)** 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는 “통합관리지침”에서 지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포함한 통합관리 대상 인건비를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.

② 학생연구자는 학사 석사 박사학위과정(통합과정 포함) 중에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의미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1.7.19., 2023.2.27.>

1.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2. 수료생 중 본교 대학원에 연구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
3.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<개정 2023.2.27.>

**제3조(산학협력단의 의무)**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
1. 학생연구자의 학업· 연구 활동 보장, 처우, 인권 보호 및 관리· 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<개정 2021.7.19.>
2.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<개정 2022.8.10.>
3. 학생인건비 수입· 지출· 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
4.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<개정 2022.8.10.>
5.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에 관한 사항 <개정 2021.7.19.>
6.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및 대학의 「대학 안전관리규정」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<개정 2022.8.10., 2024.7.29.>
7. 학생인건비 부당회수(미지급 포함) 방지에 관한 사항 <개정 2022.8.10.>
8.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합관리 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

**제4조(연구책임자의 의무)** 연구책임자(지도교수)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
1.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준수에 관한 사항 <개정 2021.7.19.>
2.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,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 준수에 관한 사항 <개정 2021.7.19.>
3.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· 연구수당 산정,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에 관한 사항 <개정 2021.7.19., 2024.7.29.>
4. 학생인건비부당회수(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· 운용 포함) 방지에 관한 사항 <본호 신설 2024.7.29.>

**제5조(학생연구자의 의무)**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 <개정 2021.7.19.>

1.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한다.
2. 연구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한다.
3. 학적변동, 업무수행 불가능,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통합관리지정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을 통보한다. <개정 2024.7.29.>

**제6조(연구실 운영 기준)**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·연구활동보장, 처우, 업무량,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·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[본조 전문개정 2022.8.10.] <개정 2024.7.29.>

**제7조(연별·반기별 활용 계획 수립)**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, 역할, 처우 등을 포함한 연간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7.19., 2022.5.2., 2022.8.10., 2023.2.27., 2024.7.29.>

**제8조(연구참여확약체결 및 변경)** ① 산학협력단장,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반드시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21.7.19., 2022.8.10., 2023.2.27.>

② 협약은 학기(또는 학년) 단위로 체결한다. 단, 신규연구과제가 학기 개시일 이후 진행될 경우 해당학기의 종료 시까지 체결이 가능하며, 연구원이 신청하여 연구책임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협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2.5.2.>

③ 연구참여확약서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. <개정 2024.7.29.>

1. 참여과제명, 과제번호, 연구수행내용, 구체적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
2. 참여기간, 금전적 보상, 학생인건비 유용금지, 안전 및 인권·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3.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.
  4. 학생연구자가 질병·실종·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- ④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,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. <본항 신설 2022.8.10.> <개정 2024.7.29.>
1.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·변경·중단·해약
  2.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
  3.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
  4. 학생연구자가 질병·실종·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  5.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<본항 신설 2023.2.27.> <개정 2024.7.29.>

**제9조(학생연구자 학업·연구권 보장)**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.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한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,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1.7.19, 2022.8.10.>

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“권리장전”에 보장된 학생연구자의 학업·연구권,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구자를 활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7.19., 2022.8.10.>

③ 누구든지 폭언·폭행·성추행·성희롱·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,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7.29.>

**제10조(학생연구자의 권익 보호)**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7.19., 2024.7.29.>

② 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.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및 대학의 「대학 안전관리 규정」에 따른다. <본조 전문개정 2024.7.29.>

③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과제 수행현황,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피요청자는 요청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. 단,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. <개정 2021.7.19., 2022.8.10.>

④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을 포함한 학생연구자의 인권 침해 사항 등의 발생으로 공식적인 문제의 해결을 원할 경우 “권리장전 제12조(해결절차)”를 따른다. <개정 2021.7.19.>

**제11조(학생인건비의 계상기준)** ① 학생인건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을 100%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23.2.27., 2024.7.29.>

1. 학사과정 : 월 1,500,000원 <개정 2022.5.2., 2024.7.29>

2. 석사과정 : 월 2,500,000원 <개정 2022.5.2., 2024.7.29.>

3. 박사과정 : 월 3,500,000원 <개정 2022.5.2., 2024.7.29.>

4. 석박사통합과정: 5학기이상 등록자 박사과정 기준적용 <본호 신설 2022.5.2.>

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시 연구과제 참여내역,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학생연구자의 인건비를 산정하여야한다. <개정 2021.7.19. 2022.8.10., 2024.7.29.>

③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연구책임자 단위로 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하며,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및 균등지급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한다. <개정 2022.8.10.>

④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가 작성한 연구참여확약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 지급 신청을 하며,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 수령인 본인 명의 계좌(1인 1계좌 원칙)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. <개정 2021.7.19.>

⑤ 과제협약 및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, 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연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경우 및 부득이 협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학생인건비를 소급 지급할 수 있다. <본항 신설 2022.5.2.>

**제11조의 2(자체점검)**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산학협력단은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본조 신설 2022.8.10., 개정 2023.2.27.>

**제12조(부당회수의 유용 금지)** ①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 <개정 2021.7.19., 2022.8.10.>

② 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는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8.10., 2024.7.29.>

③ 학생인건비를 부당회수한 연구자는 본교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회부하고 연구비 유용에 관한 사실여부의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로 판정되었을 경우 연구윤리규정 제63조(결과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한다. <본항 신설 2021.7.19., 개정 2022.8.10.>

**제13조(고충상담창구 운영)**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,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와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한다.

②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비공개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. <본조 신설 2021.7.19.>

**제14조(위반 시 조치)**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연구책임자 등이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산학협력단 등 관련 부서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조사를 실시한 관련부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,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 <본조 신설 2021.7.19.>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하되,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되, 제11조 1항은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(학생인건비통합관리)

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000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연구참여 확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.

### 1. 학생연구자 인적사항

성 명		학 번		생년월일	
소 속 (학과명)		과정 및 학기	( ) 과정	( ) 학기	
국가연구자번호					
주 소					
연락처	(휴대전화번호)		(E-mail)		

### 2. 연구참여정보

가. 연구참여기간 : 20 . . . . ~ 20 . . . .

나. 담당업무(역할) :

※ 연구수행내용,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,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

다. 계정별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률

구분	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	연구책임자계정 차등지급	합계 (세금 포함)
지급액	원	원	원
지급률*	%	%	%

\* 지급률 = 월지급액 /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

라. 학생인건비 지급일 : 매월 일

마. 지급방법 :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

※ 참여중단·종료 시 중단·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(월 등)수에 대해 일할(월할 등) 계산하여 지급함

바.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

성 명			
소 속 (학과명)		직 급	
연락처	(연구실)		(E-mail)



사.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

성명			
소속 (학과명)		직급	
연락처	(연구실)	(E-mail)	

3. 기타 확약사항

- 가.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, 학적변동, 취업 등 업무량 변동 사유 발생 시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한다.
- 나.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,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,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다.
- 다.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·보건교육을 실시하고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3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, 상해·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·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- 라. 계정책임자는 인권, 양성평등,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·폭행·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.
- 마.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(학생인건비부당회수)하지 않는다.
- 바.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사. 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,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아.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·실종·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학생연구자 : (서명 또는 인)

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: (서명 또는 인)

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: (서명 또는 인)

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 : 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